

의안번호	2215634
의 퇴 인	김미애의원
회 답 일	2026. 1. 29.
추 계 번호	25B7302

항공 ·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항공·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)	항공·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국무총리 소속으로</u>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 ※ 위원회를 ‘국토교통부 소속’에서 ‘국무총리 소속’으로 변경	의무규정
2	안 제8조(위원의 결격사유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(제1항) 5.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·개조·정비 및 판매사업 그 밖에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(<u>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</u>) 6.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, 철도차량을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, 철도건설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·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그 임직원(<u>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</u>) <신 설> 7. <u>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</u> <신 설> 8. 「<u>한국공항공사법</u>」에 따른 <u>한국공항공사</u> 또는 「<u>인천국제공항공사법</u>」에 따른 <u>인천국제공항공사</u>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<신 설> 9. 국토교통부, 「<u>한국공항공사법</u>」에 따른 <u>한국공항공사</u>, 「<u>인천국제공항공사법</u>」에 따른 <u>인천국제공항공사</u>,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(제2항 신설) ※ <u>현행</u>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2인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(항공정책실장 및 철도국장)이 겸직하고 있음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19조의2(청문회의 실시) 신설	위원회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·철도사고 등에 대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증인·감정인·참고인(이하 “증인등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증언·감정·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19조의3(국가 등의 지원) 신설	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	재량·의무 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									
1	안 제4조(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)	•미대상 – 개정안은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‘국토교통부 소속’에서 ‘국무총리 소속’으로 변경하고,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이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, 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, 현재 국토교통부 실·국장급 공무원이 겸직하는 상임위원을 신규로 임명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									
2	안 제8조(위원의 결격사유)	[개정안 주요 내용]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현행</th><th>개정안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위원회 소속</td><td>○ <u>국토교통부</u> 소속</td><td>○ <u>국무총리</u> 소속</td></tr> <tr> <td>위원회 구성</td><td>○ 상임위원(국토교통부 실·국장급 공무원 겸직) 2인 ○ 비상임위원(위원장 포함) 10인</td><td>○ 상임위원 2인 ※위원 결격사유에 <u>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을 추가하고 위원은 다른 직무 겸직 금지</u> ○ 비상임위원(위원장 포함) 10인</td></tr> </tbody> </table> 자료: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– 다만, 2026년 1월 개정된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」(법률 제21317호, 2026. 2. 28. 시행 예정)¹⁾에서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, 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사업 및 철도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의 임직원 등을 규정하며,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	구 분	현행	개정안	위원회 소속	○ <u>국토교통부</u> 소속	○ <u>국무총리</u> 소속	위원회 구성	○ 상임위원(국토교통부 실·국장급 공무원 겸직) 2인 ○ 비상임위원(위원장 포함) 10인	○ 상임위원 2인 ※위원 결격사유에 <u>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을 추가하고 위원은 다른 직무 겸직 금지</u> ○ 비상임위원(위원장 포함) 10인
구 분	현행	개정안									
위원회 소속	○ <u>국토교통부</u> 소속	○ <u>국무총리</u> 소속									
위원회 구성	○ 상임위원(국토교통부 실·국장급 공무원 겸직) 2인 ○ 비상임위원(위원장 포함) 10인	○ 상임위원 2인 ※위원 결격사유에 <u>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을 추가하고 위원은 다른 직무 겸직 금지</u> ○ 비상임위원(위원장 포함) 10인									
3	안 제19조의2(청문회의 실시) 신설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									
4	안 제19조의3(국가 등의 지원) 신설										

1)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」(법률 제21317호) 제4조(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) ①항공·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5.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·개조·정비 및 판매 사업자, 그 밖에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관계 기

2. 상세 사유

□ 청문회의 실시 등(안 제19조의2 및 안 제19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·철도사고등에 대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으로부터 증언·감정·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하며, 국가기관 등이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청문회의 실시 횟수,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수를 예측하기 어렵고,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에 대한 수당·여비 등 지급 여부 및 기준, 국가기관 등의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－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항공·철도사고조사의 총 건수는 총 70건(연평균 약 23건)임

[표 1]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건수(2022~2024년)

(단위: 백만원)

	2022	2023	2024	합 계
항공사고	21	17	11	49
철도사고	4	8	9	21
합 계	25	25	20	70

주: 위 조사건수는 사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, 2026.1.28. 현재 사고조사보고서가 작성 완료된 건만 포함한 수치임

자료: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

관·법인·단체(이하 “항공사업자등”이라 한다)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·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6.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, 철도차량을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람,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·장비 판매사업자, 그 밖에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(이하 “철도사업자등”이라 한다)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·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제11조의2(겸직금지 등)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